

# 자연환경보전을 구실로 옥상옥의 법제정은 반대

—보상대책 없는 규제일변도는 시류에 역행—

“환경처는 자연환경보전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공청회를 가진바 있다. 우리는 그 내용이 문제  
여서 이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 근 환경처에서 입법예고한 자연환경  
보전법안에 대하여 우리는 독립가 입  
장에서 한두가지만 지적하여 두고자 한다.

환경문제가 사회문제화된 오늘날 자연환  
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자는 데에  
어느 국민인들 이 기본 취지에 반대할 이  
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안이 담고 있는 내  
용이 문제여서 꼭 새로운 법을 만드는것만  
이 능사인가 하는 것이다.

예컨대 본 법안 제16조에서 보면 20~  
50년생의 2차림지구, 자연원시림지구, 고  
산초원지구에 대하여 녹지보전지역으로 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이다.

이를 놓고 볼때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은  
현재 약 2,100千ha로서 전체 산림면적의  
33%나 되며 2000년대에 가서는 약 80%에  
해당하는 면적이 녹지보전지역의 지정대상  
이 되는 면적이 된다.

이제 우리는 겨우 국토녹화를 이룩하고

산림경영적 차원에서 기히 심은 조림지는  
무육, 간벌등과 함께 경제림 조성을 위한  
수종갱신 등 사업행위가 시급한 이때 이들  
이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사  
사건건 환경처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  
는 행위 제한을 받음은 물론, 산림청장 단  
독행위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게 되  
는것과 같다.

우리는 산림청을 두둔해서가 아니라 산림  
은 산림을 다루는 전문부서가 따로 있고 각  
기 특성이 있음으로써 고유기능이 있을진  
대 자연보전이란 구실과 여론을 조성하여  
이를 등에 업고 아무 보상대책 없는 규제  
일변도의 옥상옥의 법을 만들어 시류에 역  
행하고자 함은 200만 농민산주의 의사는  
전연 무시하고 재산권 행사마저 제약을 가  
하는 행위인 것이다.

나무가 1~20년에 되는것이 아니듯 우리  
독립가는 하루이틀에 된것이 아니요, 기  
십년을 투자와 정력을 쏟아왔음으로써 되

었는데 자연훼손이야말로 독립가보다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던 말인가.

지금 현재에도 산림법상에 보전임지, 보안림, 천연보호림, 영림감독제도가 있고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야생동물의 보호규정,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법상의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보전지구, 도시계획법상의 보존녹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산림등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보존보호, 법적으로 제한, 규제받는 지역이 적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자연환경 보전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들 개별법이 환경파괴를 조장하는 법률이 아닐진대 행정편의 위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옥상옥의 법을 만드는 것에는 찬성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본시 산림경영은 심고, 가꾸고, 베고 또 심는 단순 경영원리를 적용하다보면 산림이 갖는 공익기능이 부수적으로 생산 발생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 아무 보상대책 없는 사유재산권에 제약만을 가하는 것은 민주화를 지향하는 이마당에 구시대적발상으로 밖에 볼수 없는 것이다.

또한가지 지적하는것은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부담금 제도이다.

이는 현재에도 산림법상 산림의 타용도 전용에따른 훼손원인자 부담금인 대체조림비, 개발이익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토지초과 이득세등과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되므로 국가입장만 생각하는 행정편의 위주의 발상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독립가들은 현재의 각개별법에 하자가 있다면 이들 개별법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보완을 할지언정 법률상 체제에도 맞지 않는 각 부처간의 고유기능을 무시하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을 적극 반대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 산림은 산소를 생산하는 공장이자 대기정화기

산림은 인간이 숨쉬수 있는 산소를 생산 배출한다. 1ha의 산림에서 연간 16톤의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12톤의 산소를 방출하는데 한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산소의 양은 0.75kg으로 1ha의 산림에서는 45명이 1년간 숨쉬수 있는 산소를 생산한다.

또한 근래에는 산업시설의 증가와 자동차매연으로 아황산가스(SO<sub>2</sub>)와 질소가스(NO<sub>2</sub>) 등이 많이 발생되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나무는 대기중의 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SO<sub>2</sub>)와 질소가스(NO<sub>2</sub>)를 기공을 통하여 흡수하거나 잎에 흡착시켜 맑은 공기로 정화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산림은 소음을 방지하고, 기온을 조절하며 바람을 막아 준다.

# 建 議 書

본고는 환경처가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안에 대하여 본 회를 비롯한 임업계 단체들이 환경처장관에게 반대의견을 개진한 내용이다-편집자

## 환경처장관 귀하

우리나라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하시는 귀관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리임업계에서 귀관이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안”을 살펴보면

“자연환경의 보전과 국토의 이용·관리는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과는 어긋나게 보전일변도의 강경 규제조치로 일관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효율적이용과 보전 및 사유재산권의 보호측면에서 이 법안의 주요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첫째, “녹지보전지역”을 새로 지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 법안에 의하면 20-50년생 2차림지구, 자연원시림지구, 고산초원지구를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그 대상면적은 약 210만ha로서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33%에 해당하는 광대한 면적이다.
- 녹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대상을 대통령령에 미룬 것도 법체계상 모순이 있고, 보전구역의 행위제한규정은 입목의 별채, 조림까지 규제될 것이므로 산림면적의 33%에 해당하는 광대한 지역이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그 대상물은 평생을 두고 조성한 산주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데 그 사유재산권 침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 우리나라 산림은 72%가 사유림으로서 200만 산주들이 조림하고 병충해를 방제하며, 가꾸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의 보전 대상지역이 된 것이지 자연히 조성된 녹지가 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조성자에 대한 조치는 일언반구도 없이 보전위주의 규제로 일관되었으며, 특히 녹지보전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이 전혀 없다.
- 일본의 자연환경보전법에도 원생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정하고 있으나, 사유림

“ 우리나라 산림은 72%가 사유림으로서 200만 산주들이 조림하고 병충해를 방제하며, 가꾸어 왔기때문에 녹지자연도 조성된것이지 자연히 조성된것이 아니다. ”

을 제외한 국·공유림에 국한하여 보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최 대한 보호하고 있다.

- 또한 녹지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산 불발생시 진화는 누가 하며 병충해는 누가 방제하는가? 산주가 재산권행사 마저 제한되는데도 보호관리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가?
- 그러므로 녹지보전지역은 법안 제 2 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자연환경의 보 전과 국토이용관리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도 마땅히 삭제되어야 하고, 필요 한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보전관리해야 할 것이다.

#### 둘째, 보전지역과 보전지구 지정체계의 모순점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지역은 광범위한 개념이고 구역은 지역보다 협소한 개념으로서 지역안에 구역이 지정되어야 하며 현재에도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자연생태 계보전구역등을 지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법안은 체계상의 모순을 지니고 있다.
  - ① 녹지보전지역, ② 자연생태계보전구역, ③ 특정야생동식물보전구역, ④ 해양 생태계보전구역, ⑤ 1-4에 대한 완충지역, ⑥ 도시자연환경보전지역, ⑦ 자 연환경개선지구등 1개 법안에 7개 지역과 지구를 복잡하게 지정할 뿐 아니라, 지역→지구의 개념이 없이, 어느 곳이든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데 문제 가 있다.
- 이는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아주 크므로,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필요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 셋째, 부처간 업무협조와 기능에 대하여

- 법안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이 환경처장관에게 보고, 협의, 승인을 받을 사 항만 규정하고, 환경처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규정은 전혀 없다.



나무가 1~20년에 되는것이 아니듯 우리들 독립가도 기십년을 투자와 정력을 쏟아냄으로써 되었는데 자연환경보전과 애착심이 독립가보다 더 강한자가 누구란 말인가?



-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유업무와 기능까지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인 규정으로서, 외국의 입법예로 보나 우리나라 법제경향으로 보아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다 원활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일방적인 협조요구가 아닌 각부처간의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관련조항등을 수정해야 한다.
- 환경처만이 국토의 65%인 산림을 보전·관리할 수 있다는 논리는 있을수 없으며 범국민적인 의식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다.

#### 넷째, 야생동식물보호등에 대하여

- 야생동식물관리는 현재 개별법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문화재보호법에, 476종의 야생조류와 수류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 관리되고 있으며, 타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고 있는 야생동식물만을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환경처에서 보호·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런데도 이 법안은 개별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모든 야생동식물을 환경처에서 포획이나 수출입허가등 중복되게 규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개별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야생식물은 전문부처에서 관리하고, 미보호야생동식물만을 현재와 같이 환경처에서 관리하여야 2중, 3중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민불편이 해소될 것이다.
- 몇개 부처가 관리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환경처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인가? 허가만이 능사가 아니라 불법포획등을 어떻게 단속관리 할 것인가?

끝으로 자연환경보전의 대상이 주로 산림이라 할진데 이 법안이 우리나라의 산림경영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현행 산림법도 산림의 보호육성과 공익기능증진에 그 목적이 있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보안림, 천연보호림등의 지정, 입산통제, 산지정화 구역지정등 자연환경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자연환경보전차원을 넘는 과도한 규제조치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환경보전문제도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국민의식에 달려있다.

- 또한 우리나라 환경보전문제는 강력한 기본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행 법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국민의식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산주의 재산권을 고려치 않고 과중한 규제조치를 하여 사유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200만 산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일본만 하더라도 행위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규정, 벌채방법등에 따라 허가사항에 예외인정, 농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대한 배려, 국·공유림에만 보전지역 지정등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 법안이야 말로 법만능주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서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보전과 개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우리 임업인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1991. 8. 6.

대표 : 한국독립가협회

회장 권 오 진

한국독립가협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한국엽도협회  
 한국양묘협회  
 한국해외산림개발협회  
 한국합판공업협회  
 한국포플러위원회  
 한국조경수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임우회  
 한국임학회  
 한국임정연구회

권오진 회장의 회원일동  
 유종열 회장의 회원일동  
 정상희 회장의 회원일동  
 김명원 회장의 회원일동  
 승상배 회장의 회원일동  
 배영주 회장의 회원일동  
 심종섭 회장의 회원일동  
 김영구 회장의 회원일동  
 김근호 이사장의 회원일동  
 김영준 회장의 회원일동  
 이여하 회장의 회원일동  
 김장수 회장의 회원일동

**당신은 문화인, 질서를 생활화**

# 개별법 존중하고 특성 살려야 山林法이 곧 「자연환경보전의 기본법」

최민휴 / 임업연구원  
산림경영부장

본문은 환경처가 지난 8. 1 환경연구원에서 개최한 자연환경보전법(안) 공청회에서 임업연구원 산림경영부장 최민휴씨가 발표한 발언요지이다. — 편집자

林業研究院 崔政休입니다. 제가 山林廳에서 왔기때문에 關聯性이 깊어 總論部門과 各論部門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싶으나 10分內에 하려면 總論部門만 말하겠습니다.

各論部分은 나중에 Floor에서 많은 發言 부탁드립니다.

環境處의 立法趣旨를 要約한다면

① 自然環境保全에 대한 基本法을 만들어 ② 政府의 自然環境保全機能을 總括·調整함으로써 ③ 開發과 保全의 均衡을 確保하여 ④ 國民이 豊饒롭고 快適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理解됩니다. 대단히 좋은 趣旨입니다.

國民이면 누구나 이 趣旨에 反對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問題는 이 法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이대로 새로 制定하는 것만이 이러한 立法目的 達成을 위한 唯一最善의 方法이나 하는

데 있습니다.

저의 意見으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理由를 몇 가지 들지요.

첫째로 提案者側은 이 法案이 自然環境保全에 關한 基本法이라고 하나, 그 內容인즉 47個條項 中 基本法的 要素는 10餘個條項뿐이고 대부분은 政策實行法的 要素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아까 國土開發研究院 이장식室長께서도 言及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環境政策基本法에 規定되어 있는 基本的 事項을 새 基本法을 만들어 2重으로 規定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補完할 事項이 있다면 環境政策基本法을 改正함으로써 足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法案이 담고 있는 實行法的 要素를 살펴보면, 綠地保全地域, 自然生態系保全區域, 自然環境改善地域 및 特定野生動物·植物保全區域을 指定管理하고, 나무를

“  
**山林法은 말이 산림법이지  
 법률명칭을 「山林 및 自然環境  
 保全에 관한 基本法」이라고  
 할만큼 環境保全에 置重하고  
 있는 것이다.**  
 ”

심고 가꾸고 베는 일 등 廣範圍한 行爲制限을 規定하고 있습니다.

廢棄物, 大氣汚染等과 같은 生活環境分野는 他 管掌機關이 없으므로 別問題라 하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自然環境分野의 實行法的 要素들은 대부분이 行政各部의 既存 個別法에 廣範圍하게 規定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山林法에 保全林地, 保安林, 天然保護林, 營林監督制度가 있고, 鳥獸保護 및 狩獵에 關한 法律에 野生動物保護 規定이 있으며, 國土利用管理法上 自然環境保全地域, 自然公園法上 自然保全地區, 都市計劃法上 保存綠地, 自然綠地, 開發制限區域 指定 등이 있습니다.

이 法의 立法趣旨가 行政各部의 自然保全業務를 總括·調整하는 것이 目的일진데, 이와 같은 수많은 既存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法과 行政體系에 또 다시 各種 自然保全地域을 指定·管理하겠다는 것은 各 部處의 環境業務를 總括·調整한다는 環境處의 限界를 넘어, 實際로는 屋上屋을 만들어 各 部處의 環境行政秩序에 混線과 摩擦만을 일으킬 뿐이라고 生覺됩니다.

짐작컨데 이러한 各種 指定·管理措置들은, 아마 山林法이 開發爲主로 되어 있어 保全分野를 새로이 強化해야 開發과 保全이 均衡을 취할 수 있다고 生覺한 나머지, 이 法案을 마련하신것 같으나, 實相은 그와 正反對입니다. 山林法과 우리 林業現實을 直視할 必要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山林法은 30年前에 制定될 當時만 해도 環境問題가 별로 없었을테니까 山林法이라 이름을 붙였지, 環境問題가 커다란 社會問題가 되고 있는 오늘날 山林法의 內容과 各條文을 살펴본다면, 오히려 그 法律名稱을 『山林 및 自然環境保全에 關한 基本法』이라고 法律名稱을 바꿔야 할만큼, 環境保全에 置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山林法 總126條項中 自然保全을 위한 規制條項이 73個로써 約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30年前부터 이와같이 強力한 生態環境保全을 위한 山林法이 있었기에, 우리는 完全히 荒廢된 國土를 綠化시켰고, 自然環境을 造成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자리에서 保全을 論할 만한 바탕을 마련했다는 點을 銘心해야 할 必要가 있습니다.

그러나 國土綠化를 完成하고 民主化時代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事情은 달라졌습니다. 山을 所有하고 있는 200萬 農民들은 規制와 保全一邊倒의 山林法에 대한 怨聲이 衝天하고 있습니다.

規制爲主, 保全爲主의 山林法을 大幅 改正하여 開發의 領域을 넓혀야 開發과 保全의 均衡이 達成된다는 主張이므로, 이러한 農民들의 正當한 主張을 拒否할 수 없는 現實입니다.

實情이 이러함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農民輿論과는 反對로 自然環境保全이란 이름



“  
**각종 規制와 行爲制限 등 재  
 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으  
 나 이에 상응하는 손실보상제  
 도는 없다.**  
 ”

으로 또 다른 規制를 追加시킨다면, 모든 農民들로부터 자기 山林을 가꾸고 投資하려는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結果가 되어, 開發과 保全의 均衡을 達成하면서 環境容量을 擴大해 나가는 커녕, 오히려 그 不均衡을 加速化시키게 될 것이 뻔합니다.

특히 自然環境保全法案 中에는 各種 規制와 行爲制限等 財産權을 制限하는 條項은 있으나 이에 相應하는 損失補償 制度가 없다는 點도 문제이고, 山林을 開發할 境遇 이미 받고있는 代替造林費, 開發負擔金等도 무거운데, 自然環境保全負擔金을 追加하는 것도 問題이며, 綠地保全地域 指定範圍도 現在의 林木狀態로는 全 山林面積의 33%에 달하나, 2000年代에는 80%에 이를 展望이여서 대부분의 山林은 環境處의 支配下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도 問題입니다.

한편, 自然環境保全에 關한 計劃이나 施策을 세우고 施行할 때마다 關係部處는 事前에 環境處와 協議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農林水産部長官이나 山林廳長은 獨自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오히려 自然環境保全計劃을 審議하게 될 環境

保全委員會에는 農林水産部 長官의 參與機會가 없다는 點도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法案이 日本의 自然環境保全法을 많이 參考한 것 같으면서도 日本法이 既存 秩序를 尊重 收用하고 있는데 反하여 이 法案은 他 法과 他 機關의 權限을 侵害하고 있고, 原生自然環境保存地域을 國·公有林에 局限하고 있는데 反하여, 이 法案에서는 이러한 制限이 없으므로 私有林에 指定할 境遇 財産權侵害가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法案은 立法趣旨와는 달리 自然環境保全에 關한 基本法만도 아니며, 各 部處의 權限과 關係法을 總括 調整하는 次元도 아니며, 開發과 保全의 均衡을 達成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상을 要約하건데, 이 法案 中에서 基本法에 담아야 할 部分은 環境政策基本法으로 一元化하는 것이 옳고, 實行法的 性格의 條項들은 行政各部의 既存法 體系와 權限을 尊重하고, 重複을 피하기 위하여 環境處는 他 部處보다 한段階 높은 次元에서 環境政策 總括官廳의 地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꼭 行政各部가 cover하고 있지 않은 분야가 있다면, 이 分野만큼은 새로운 制度를 마련해야겠지만, 그 方法으로서 새로운 法을 만드는 것이 좋을지, 그럴것 없이 環境政策基本法의 定한 바에 따라 有關部處에 要請하여 補完토록 하는 것이 좋을 지를 檢討하는 것이 결국 當面한 自然環境保全政策의 歸結點이 되어야 한다고 生覺합니다.

그리하여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좋은 理念이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오히려 그 方法과 手段의 不實로 말미암아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結果가 되지 않도록 根本的으로 再考되어야 합니다. 感謝합니다.

## 補償대책없이 法定制限林만 늘어나

李 在 石 / 임정연구회 이사

環境處는 이번에 自然環境保全法案을 立法豫告하고 8月1日은 이 法案에 對한 公청회를 開催하였고 이 法案 制定에 意見이 있는 團體 또는 個人은 그 意見書를 8月8日까지 環境處長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本法案에 對하여 우리 林業人들은 至大한 關心이 集中되지 않을수가 없게 되었다.

그것은 生活環境이 아닌 自然環境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山林이 主宗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山主나 林業人이라고 해서 自然環境保全의 重要性을 누가 反對하거나 理解를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問題의 本質은 지금 自然環境과 關聯하여 法定 制限林으로 指定 編入된 것이 大端히 많다.

自然公園法에 依하여 自然公園으로 擴定된 것이 近 30萬ha에 達한다.

또 山林法에 依하여 保安林으로 擴定된 곳이 近 25萬ha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군사시설 保護地

區等 法定制限林으로 指定編入된곳은 所有權 行使는 制限 받고 한편의 補償이 없이 그저 私有林이 公共用에 供하고 있는 實情이다.

以上과 같이 補償없는 所有權 制限은 말 할것도 없고 한 山林이 都市計劃法 國土利用管理法等 無慮 10餘個 法案에 規制가 되어 山主들이 安心하고 山林 投資를 할수가 없어 國民들의 造林意慾은 漸次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石油보다도 더 심한 次源戰爭 品目으로 指目되는 木材資源造成에 一大충격을 招來하고 있는 現實이다.

여기에 雪上加霜으로 이번에 立法 豫告한 自然環境保全法案 第16條를 보면 天然林 人工林 할것없이 必要에 따라서 綠地保全 地域으로 指定할수 있게되어 있다.

이것은 또하나의 法定制限林이 더 생기는 結果가 된다.

問題는 山林은 自然環境이 아닌곳이 없다.

이 綠地保全地域으로 指定이 되면 同法案 第40條에 依하여 國家는 私有地인 경우 買入하는것으로 되어 있지만 造林한 立木

및 地上權은 補償對策에서 除外한것은 크게 注目되는 대목이다.

특히 保全地區로 指定이 되면 나무를 심는것 까지도 制限을 받는것은 絶對 保全을 意味하는바 여기에 對하여는 우리 林業專門人들이 보기에 는 너무도 큰 山林技術上의 問題點을 指摘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다.

山林은 絶對保全論者의 立場에서봐도 산은 이제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出入統制만 하면 山林의 共益機能을 그대로 발휘할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天然林이고 人工林이고 間에 密廢된곳은 그냥두면 나무를 다버리게 되고 나무가 자라지도 않는다. 또 산불이 나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다.

그래서 間伐도 하고 가지도 따주어야 하며 經濟的으로 價値가 없는 나무는 베내고 有用樹種을 植栽해야 한다. 獨逸의 경우 우리보다도 産業化가 먼저된 나라들도 山林의 保全과 開發의 調和를 이루어 山林에서의 私益과 公益을 조정하여 산을 專門으로 다루는 山林 官署가 맡아서 일을 잘 處理하고 있다.

그래서 本人이 主張하고저 하는것은 自然環境保全法은 廢棄되거나 大幅 修正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理由는 只今 環境政策 基本法이 있음으로 이 基本法을 改正해서 自然 環境保全에 關한 宣言의인 條項을 補完하면 된다고 본다.

그리고 本法案에 執行法的 性格을 띤 條項들은 他法과 二重三重으로 重復됨으로 本法에 拘束을 받는 山主나 國民들은 큰 負擔이다.

山林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天然林이건 人工林이건 가지도 따고 간벌도 해야하고 수종갱신도 해야 하는데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보상도 없이 행위제한만 받게되니 문제다.

國土保全이나 環境美化, 水源涵養, 國民보건等 國民의 環境과 關聯된 山林은 이미 山林法에 依하여 保安林 13種으로 25萬ha를 이미 指定해서 管理하고 있다. 法定制限林이 아닌 保全林地도 山林法에 依하여 그것도 營林計劃을 세워서 木材生産도 하고 環境保全도 할수 있도록 山林의 計劃制度가 施行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을 無視하고 自然環境保全法制定을 強行한다면 山林法을 위시해서 自然環境에 關한 關係部處의 專門性있는 法위에 屋上屋으로 君臨하여 憲法이나 政府組織法 法上에도 合致되지 않는다고 본다.

本稿에서 特히 強調하고저 하는것은 自然公園法이나 山林法이나 自然環境 保全에 關한것이나 우선 山林은 山林專門 部署가 맡아서 一貫性있는 法 또 政策으로 國民이 信賴할수 있도록 해야겠고 또 하나는 私有財產을 公益에 供하기 위하여 所有權을 制限할때는 必히 補償을 해서 無主公山이 아니라는 觀念을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